14.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개정령(안)입법예고

자료제공 :환경부공고 제1997-145호 1997. 11. 20

주 요 골 자

가. 현행 검사수수료 체계의 불균일로 주 기종(승객용 가변전압·가변주파수)의 경우 완성검사 수수료는 △20.0% 인하되고, 정기검사수수료는 7.2% 인상되며

나. 조정된 세부적인 검사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음.

<조정된 검사수수료 체계>

구 분				기 준	수수료(원)		체증요금(원)	
					완성및수시	정 기	완성및수시	정 기
엘리베이터	승객용	로우프식	교류	5층, 8인, 60m/분	220,000	85,000	층당2,500	층당2,500
			가변전압, 가변주파수	8층, 11인, 90m/분	240,000	115,000	층당3,000	층당3,000
			직류 기어	8층, 11인, 90m/분	205,000	100,000	층당3,000	층당2,500
			직류 무기어	12층,15인, 120m/분	235,000	100,000	층당2,000	층당2,500
		유압식		3층, 8인, 45m/분	235,000	100,000	층당3,000	층당3,000
	화물용	로우프식		3층, 1ton, 45m/분	235,000	100,000	층당3,000	층당2,500
		유압식		2층, 1ton, 45m/분	240,000	100,000	층당3,000	층당3,000
에스컬레이터, 수평보행기				폭 1,200m/m	148,000	95,000	m당 1,500	m당 1,500
덤웨이터				3층, 100kg	75,000	45,000	층당2,500	층당2,000

계 정 취 지

가.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규정된 승강기 검사수수료 체계는 199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으나, 그 기간의 여건변화로 승강기의 주요기종 및 검사업무등이 변경되었으며,

나. 관계기관(행쇄위 등)에서도 현행 검사수수료에 대해 조정 요청이 있어, 용역기관(KPC)에서 연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

주택회보